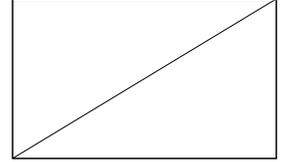


2023년도



국가보조항로(대천-외연도) 운항 용역 설계서

2023년도 3월 설계	설 계 자		팀 당		과 장		청 장	
--------------	-------------	--	--------	--	--------	--	--------	--

국가보조항로(대천-외연도) 운항 용역 설계서

과업개요 : 운항 용역 1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1. 과 업 지 시 서
2. 특 별 계 약 조 건
3. 예 정 가 격 산 정 기 준
4. 산 출 내 역 서

1.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서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 입찰로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와 발주기관(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간에 보조항로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술함으로써 보조항로 지도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운항계획에 의한 국가보조항로 운항
- 여객선 안전운항 및 선박수리 등의 관리

1-3 과업기간

- 용역기간은 1년 6개월(2023.07.01. ~ 2024.12.31.)으로 한다.

1-4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1-5 대금지급

- 용역금액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 운항결손액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급하고 장기민간용선료는 보령시에서 지급한다

1-6 과업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예산 및 기타 발주자의 형편에 의해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중단을 요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별표3]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이하 “특별계약 조건”이라한다) 제1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운법」 및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용역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2-2 선박

- 본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항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시까지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 할 수 있도록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선원

- 민간선사의 폐업(면허포기)으로 인한 국가보조항로 운영으로 기존 선원에 대한 승계 의무는 없음
- 기존 선사에서는 국가보조항로 운영 시점인 '23.7.1. 이전까지 발생한 기존 선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으로 퇴직금 누적 및 승계조건이 부여됨
- 본 용역에 종사하는 선원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착수 후 선원 고용 및 교체 시 선원변동 내역(이력서 및 자격사항 포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발주기관은 선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선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여객선 운항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2-4 선박관리업무 담당자

-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까지 여객선 관리업무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박관리 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이력서 및 자격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계약상대자는 선박관리업무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 및 자격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단위 및 언어

- 용역수행 성과물 작성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6 용역과업의 추진

- 용역 과업이 용역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및 제 역무를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과업의 변경

-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이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용역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8 성과물의 보관

-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항해일지, 기관일지, 선박검사 자료, 선박수리 자료, 일일 점검일지 및 승하선 명단 등의 자료는 대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과업을 계약 개시일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 수행 선원 및 선박관리업무 담당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2-10 과업수행 성과보고

- 용역 계약상대자는 매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 선박운항실적 및 여객(차량)수송실적,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 월별 운항결손액 사용내역
 - 선원변동내역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2-11 조사확인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승선인원 및 화물량 등의 수입금 내역 조사
 - 선원임금 지급현황, 선용품 구입실태 등의 지출비용 사용내역 조사
 - 선박 수리내역 확인 및 관리상태 조사 등

2-12 용역 성과물의 작성제출

- 항해일지, 기관일지 등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된 성과물 일체는 계약 종료시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 실시사항

3-1 운항계획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운항 시간표

항로	운항기간	출발 · 기항 · 종착지	거리 (마일)	운항시간 (왕복)
대전-외연도	○ 4월 ~ 9월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 호도 녹도 외연도</p> 1) (08:00) → (08:55)(09:00) → (09:10)(09:15) → (09:55) (11:50) ← (11:05)(11:00) ← (10:50)(10:45) ← (10:05) 2) (14:00) → (14:55)(15:00) → (15:10)(15:15) → (15:55) (17:50) ← (17:05)(17:00) ← (16:50)(16:45) ← (16:05)	25.5	3:50
	○ 10월 ~ 3월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 호도 녹도 외연도</p> 1) (08:00) → (08:55)(09:00) → (09:10)(09:15) → (09:55) (11:50) ← (11:05)(11:00) ← (10:50)(10:45) ← (10:05) 2) (13:00) → (13:55)(14:00) → (14:10)(14:15) → (14:55) (16:50) ← (16:05)(16:00) ← (15:50)(15:45) ← (15:05)		3:50

- 조석간만의 차이로 구간, 항차 및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 기항지 및 운항시간 변경운항은 물량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
 - 하계, 설 · 추석 등 특별수송기간 및 주말 중의 수송수요가 있을 경우와 발주청의 운항지시가 있을 경우의 기항지 추가 및 증회운항
 - 기타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각종 민원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운항시간 및 기항지 추가 운항의 경우

나. 여객선 능력

- 연해구역(대천-외연도 항로)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1일 생활권 구축 관련 1일 2항차가 가능하며 정원 150명 이상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

3-2 선원관리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가진 선원과 승무정원이 승선한 후 선박을 운항하게 하여야 한다.

대천-외연도 항로(연해구역)		
직책명	면허등급	인원
선장	5급 항해사	1명
기관장	5급 기관사	1명
1등항해사	6급 항해사	1명
조기장	-	1명
합계(승무정원)		4명

- 1명 이상의 예비선원을 확보하여 선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선원에 대한 임금, 유급휴가 등은 선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사무실 및 선박관리업무 담당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기기 등을 갖춘 사무실을 갖추고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인원이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무선 비상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하여 여객선 운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사무실에 상주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4 선박안전운항

- 계약상대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운법」 등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및 출항전 점검 등의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선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3-5 선박유지보수

- 장기민간용선 투입으로 계약금액 외 대수선비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선체, 기관, 항해설비, 무선설비, 소화설비 등의 각종 설비 및 속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관 및 각종 설비 등의 제조자 등이 권고하는 시기·간격 등에 맞추어 해당 설비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선박, 기관 및 각종 설비 등에 대한 분기·년 단위의 유지보수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인수한 각종 비품 등을 계약 종료시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6 휴항시 대체선박 운항

-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적인 선박검사 및 선박 고장 등에 의한 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선박검사로 인한 휴항기간은 정기검사의 경우 20일, 중간검사의 경우 15일 이내로 한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정기적인 선박검사 이외의 사유로 대체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7 여객선 운임 등

- 계약상대자는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하여 여객승선권 및 화물운임표(차도선에 한한다)를 발권하여야 한다.
-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운임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변동금액을 계약종료 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4. 예정공정표

- 착수보고 : 계약개시 전
- 계약개시 및 물품인수 : 계약개시일
- '23년 및 '24년 선박 정기검사 일정
- 계약종료 및 물품 인계 : 계약종료일

5. 보안관리

-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보안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보안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보안 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정규직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5-1.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항용역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인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안전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내용, 검사 수행을 위해 제공한 도면, 기타 자료 및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 이외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5-2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할 것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4 서류제출 등

-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참여인력(이력서 포함) 및 조직편성표, 기타 본 과제를 위한 참고사항 등을 포함한 착수계와 참여검사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6. 기타

- 본 과업지시서 외의 사항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 조건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해석(내용)이 다른 경우 지침 및 특별계약조건에 따른다.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2.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 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가보조항로 운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운항시간, 운항횟수, 운항속력 등의 운항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표소 관리 등 보조항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조(선원승계 및 근로자 관리 등) ①삭제

② 계약기간 중에 고용된 고용된 선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의 관리책임자 등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원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선원을 채용하여 선박운항중에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⑤계약상대자는 선원의 결원 또는 일시 업무량의 과다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선박관리업무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⑦계약상대자는 고용을 승계한 선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빼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원·선박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발행한 공제료 견적서를 근거로 입찰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에 따라 공제료를 집행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분손담보 특별약관(ITC (Hulls)) 조건에 따라 선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전산발권) ①계약상대자는 연안여객선 전산대표시스템을 통하여 여객승선권 및 화물운임표(차도선에 한정한다)를 발권해야 한다.

②연안여객선전산대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한 후 전산발권 이외의 방법으로 발권을 할 수 있다.

제8조(여객선 휴항 및 대체운항 등) ①계약상대자가 여객선 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랑주의보 등의 기상악화,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휴항을 신청 또는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운항관리센터의 운항

통제 사실확인서, 선박검사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합당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방에게 선박운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④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따라 여객선을 휴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운항계획 등과 동등한 수준의 여객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대체 운항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⑤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4항에 의한 대체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운항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는 운항결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삭제

- 제9조(선박검사 및 예비선 사용 등) ① 「선박안전법」에서 규정된 정기·중간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국유 예비선을 대체 운항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시기를 선박검사에정일 2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법정 선박검사에 따른 국유 예비선 사용 기간은 발주기관이 과거 검사집행기간 (정기검사는 20일, 중간검사는 15일 범위)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 예비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운항여객선의 휴항에 따라 사유 여객선(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포함한다)을 대체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 예비선 대체운항의 수입금은 예비선 관리선사의 수입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유 여객선의 대체운항 수입금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법정 정기적 선박검사기간 이외에 국유 예비선 또는 사유선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대체 운항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이어야 한다.

-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의 선정, 선박수리내역 및 선박수리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내용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감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⑦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선박검사내역, 수리내역 및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⑧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선박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려는 시점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기준일 이후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에 여객선을 반환해야 한다.
- ⑨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사 등이 추천하는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을 사용해야 한다.
- ⑩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사 등이 권고·지시하는 부품의 교체주기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기관 등의 설비를 관리해야 하며,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 등에 의한 손해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선박을 수리할 때 입찰 시 제출한 "선박수리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수리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2011.9.29. 조항 신설>

제10조(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중간 기항지 변경 등 계약물량과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다음의 비목을 계약금액에 증감시킬 수 있다.

가. 선원의 증원(법정선원에 한정한다): 인건비

나. 선박 또는 선종의 변경: 유류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수입금

다. 기항지 변경 등 항로조정: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 운임의 변경: 수입금

마. 운항횟수의 변경: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항차당 운항거리의 변경: 유류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송기간, 하계철 또는 주말 등 항로별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증회운항 등에 따른 물량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④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최저운항속력 미만으로 운항하거나 주기관의 사용유종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류비의 증감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운항수입금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10퍼센트의 증가분은 운영선사의 수입으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분은 운영선사의 노력과 외생변수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하여 조정한다. 운임수입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운항수입금의 증감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그 증감한 금액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가. 해당 섬 지역이 관광지로 조성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나. "가고 싶은 섬" 등으로 선정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유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라. 연육교 또는 연도교의 설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마. 주민의 이도화 내지 무인화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바. 그 밖에 운임수입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생변수가 발생하였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인상 등

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선원인건비, 선용품비, 유류비, 안전관리비, 임시용선료 등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①삭제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선박운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선박운항실적 및 여객(차량)수송실적,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2. 월별 운항결손액 사용내역
3. 선원변동내역
4. 선박유지보수 내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1. 승선인원 및 화물량 등의 수입금 내역 조사
2. 선원임금 지급현황, 선용품 구입실태 등의 지출비용 사용내역 조사
3. 선박 관리상태 조사

③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인건비, 안전관리책임자비: 월별 산출근거,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2. 유류비: 유류공급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세금계산서

3. 선박수리비: 선박수리와 관련한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명서류(견적서, 수리업체(조선소) 발행 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증빙사진 등).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혹은 송금영수증
4. 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보험 공제료(보험료): 해운조합 발행 세금계산서(납부증명서)
5. 선용품비: 세금계산서
6. 운항관리비: 납부증명서
7. 임시 용선료: 세금계산서(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사용한 경우 제외)
8. 전산대표시스템 수수료: 해운조합 발행 납부증명서
9. 일반관리비: 집행한 항목별 세금계산서,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등
10. 이윤: 증빙서류 없음
11. 수입금: 전산대표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내역 증명서

제14조(개선명령)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운항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 제5조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류비, 운항관리비 및 법정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
4. 제5조를 위반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 해지 또는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따른 전산발권을 하지 않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항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박운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체선박 운항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 제9조제7항에 따른 선박검사내역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2.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기관제조자 등이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선박수리 및 정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분기별 점검에 의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16. 계약상대자가 운항결손액을 선박운항과 관련 없는 용도로 유용한 경우
 17. 계약상대자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한 경우
-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당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조항로 운항이 크게 저해된 경우
- ②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제·해지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해지예정일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성실히 운항해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국가보조항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해석) 계약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쌍방 간 합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3. 예정가격 산정기준

1. 일반사항

가. 예정가격 산출의 일반원칙

- 1) 예정가격은 계약기간(3년)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예정가격은 비목별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합산 후, 수입금의 예정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 비목별 예정가격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비목별 예정가격 =

{1차년도 예정가격(=기준금액×예상단가변동률×적용일수/365)}

+ {2차년도 예정가격(=1차년도 예정가격의 연간 환산분×예상단가변동율)}

+ {3차년도 예정가격(=2차년도 예정가격×예상단가변동율)}

+ {4차년도 예정가격(=3차년도 예정가격×예상단가변동율×적용일수/365)}

* 적용일수는 1차년도의 경우 계약 개시일부터 12.31까지, 4차년도의 경우 1.1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 기준금액이 1차년도로부터 2년전 실적으로 산정된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을 이중으로 적용함

- 3) 기준금액 및 예상단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되 산출방법은 비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량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경우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실적치(예, '07.1.1~12.31)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예, '05.1.1~'07.12.31)

해당선박의 비목별 평균증가율

나) 연도별로 수량 편차가 많은 경우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산술평균치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

다) 단일의 단가가 존재하고, 그 단가가 매년 정기적인 시기에 조정되는 경우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해당 연도의 단가 × 수량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해당 연도 포함, 과거 3년간 단가 변동율

4) 단가변동률 산출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기하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 = $\{(최종 연도 단가/기준연도 단가)^{1/n-1}\} \times 100$. 단, n = 최종 연도-기준연도

5) 보조항로 신설 또는 신규 선박의 투입 등으로 3)에 의한 산출 기준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운영기간의 실적치가 적절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실적치를 적용

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신설 보조항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 다만, 특정항로와 관계없이 전국 평균치를 적용하거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

나. 계약금액 조정

1) 예정가격 산출시 예상단가변동율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시 산출된 금액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전국 보조항로에 일괄 적용한다.
 - 나) 수입금의 경우, 선사의 노력이 아니라 도로신설 등의 외생변수로 큰 폭으로 증감하여, 당초 입찰에 의한 결손액 지급이 부당한 것으로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 다) 그 밖에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2) 입찰 및 계약 당시에 설정한 계약물량 및 계약조건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며, 지방청장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2)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량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 비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선원의 신규채용: 선원 인건비
 - 나) 선박 또는 선종의 변경: 유류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수입금
 - 다) 기항지 변경 등 항로조정: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 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 운임의 변경: 수입금
 - 마) 운항횟수의 변경: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 바) 항차당 운항거리의 변경: 유류비
- 4) 선사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고·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기존 실적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 예정가격의 비목

- 1) 선원인건비: 선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퇴직금은 제외한다. 수당에는 각 항로별 특성에 맞게 벽지수당 등을 포함한다. 선원법에 의한 예비원 분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 2) 유류비: 선박의 추진에 드는 유류 구입비용이며, 윤활유 등 그 밖의 유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3) 선박수리비: 선박의 수리에 직접 소요된 각종 수리비와 상가비용,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 검사수수료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일상적인 정비·점검에 필요한 공구, 페인트 등 자재의 구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4) 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 공제료(보험료): 여객공제료, 선원공제료, 선박공제료, 선주배상책임공제료를 포함하되,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5) 선용품비: 윤활유, 페인트 등 선박의 운영·정비 및 선원의 선상생활을 위해 선박에서 직접 사용되는 제반 물품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수리를 위한 것이 아닌 예비품 구입비용 등은 선용품비로 처리한다.
- 6) 안전관리비: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납부하는 운항관리비와 안전관리책임자 비용을 포함한다.
- 7) 임시 용선료: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 기간 중 사유 선박을 일시 용선하는 비용을 말한다.
- 8)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위 비목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합산액)의 5/100로 산정한다.
- 9) 이윤: 위 비목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합산액에서 제7호의 임시용선료를 제외한 금액의 10/100으로 산정한다.
- 10)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보조항로 전산매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를 말하며, 제11호의 수입금 보전시 수입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 11) 수입금: 해당 기간 중 여객 및 화물(차량을 포함한다) 운송수입금을 말한다.

12) 회계검토비용: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회계검토 비용을 말한다.

2. 비목별 예정가격 산출기준

가. 선원 인건비

- 1) 기준금액: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실시일 직전연도의 제 수당을 포함한 내항여객 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에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항로의 특성을 고려한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 예비원의 경우 승선중인 선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하되, 예비원의 근로시간이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의 70퍼센트이상인 경우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 평균임금의 100퍼센트
-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 전국의 내항여객선원의 인건비의 평균인상률(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

나. 유류비

-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선박별 평균 유류사용량에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말일의 유류단가(한국해운조합이 매월 발표하는 단가로 세전가격에 사업회비 및 용역비를 각각 더한 값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
-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유류단가의 평균변동률
-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여 정상적인 유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선박별 평균 유류사용량에 예정가격 산출 당시 최근 3개월 평균 유류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박수리비

1) 기준금액은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항로의 선박수리비 평균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과거 3년간에 정기검사(안전항행검사를 포함한다)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있었던 해의 선박수리비는 22.2퍼센트 할인하여 기준금액을 계상한다.

나) 계약기간에 정기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비를 22.2퍼센트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선박검사 수검비용은 선박검사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계약기간 동안에 선령이 15년을 넘는 선박은 기준금액보다 10퍼센트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에 선령 15년의 경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수리비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월할로 계산한다.

마) 선박 건조 후 첫 1년간의 수리비는 수리비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바) 계약금액이 조정된 대수선에 의한 수리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리비는 수리비 예정가격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변경된 가입조건으로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선령, 톤급, 연간 운항시간 등이 유사한 선박의 수리비 집행내역을 준용한다.

라. 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 공제료(보험료)

1) 여객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료 변동률

2) 선원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료 변동률

3) 선주배상책임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 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료 변동률

4) 선박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이 ITC (Hulls) 조건으로 제시하는 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박공제료 변동률

5) 1)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1차년도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발행한 견적서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선용품비

1) 기준금액: 전체 보조항로 동종 선박의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선용품비 평균액 중 상위 10퍼센트 및 하위 10퍼센트를 제외한 평균액. 다만, 동종 선박의 척수가 3척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바. 안전관리비는 운항관리비와 안전관리책임자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운항관리비는 카목의 연도별 여객수입금 예정가격에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 3조에서 정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항관리비용 부담률(운임액 대비 점유율(%))을 뜻한다)을 곱한 값으로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비용은 「해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역계약 단위별 보조항로 선박척수에 비례한 안전관리책임자 비율을 산정하여 기관장의 인건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 임시 용선료는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 기간 중 사유선박을 일시 용선하는 항로에만 적용한다.

1) 기준금액: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선박의 정기 또는 중간검사일수 × 해당항로의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일일 용선료

2) 1)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적치가 없는 항로의 경우에는 국가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톤급, 선령 등이 유사한 선박의 일일 용선료 기준을 준용한다.

3) 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단가상승률

아. 일반관리비는 운항원가(가목부터 사목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액)의 5/100를 적용한다.

자. 이윤은 총운항원가(가목부터 아목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액)에서 사목 임시용선료를 차감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차.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는 한국해운조합이 산정한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과거 3년간 국가보조항로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하며, 카목의 수입금 보전시 해당 수입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카. 수입금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운임수입

2) 예상단가변동률: 원칙적으로 해당 항로의 3년간 평균수입변동률을 적용하되, 동 기간중 요금인상이 있었다면, 요금인상 이후의 기간은 수입에서 인상률만큼을 할인한다.

3) 2)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중 해당항로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수송인원 또는 수입금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예상단가변동률의 정상적인 증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청장은 예상단가변동률을 ± '과거 3년 평균 내항여객수송변동률(예, '05~'07년간 6.7%)'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 4) 지방청장이 보조항로 사업자와 보조항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기간 중 운임인상을 반영한 경우 해당 인상률을 인상시점 이후의 운임수입에 가산해야 한다.
- 5) 1)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입의 기준금액은 차량매표를 포함한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의 전산발권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면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부터 기산하여 입찰실시일 이전까지 12개월 동안의 운임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타. 회계검토비용

- 1) 기준금액: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 회계검토 비용
-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단가상승률

3. 신설 보조항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

가. 인건비

- 1) 기준금액: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실시일 직전연도의 제 수당을 포함한 내항여객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에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항로의 특성을 고려한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 예비원의 경우 승선중인 선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하되, 예비원의 근로시간이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 평균임금의 100퍼센트
-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 전국의 내항여객선원의 인건비의 평균인상률(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

나. 유류비

-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말일의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유류단가 × 해당 선박의 시간당 연료소비량 × 1항차 운항시간 × 해당(인근)항로의 3년간 평균운항횟수

- 2)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이 대체 투입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실제 유류소모량을 근거로 선박의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3) 신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항항로의 일정(시간, 운항속력, 여객수, 운항여건 등 고려)에 따라 시험운항한 후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 계산한다.
- 4)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연평균 유류단가의 3년 평균변동률
- 5) 1)에서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여 정상적인 유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유류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박수리비는 기존 국가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선령, 톤급, 연간 운항시간 등이 유사한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수리비를 준용하여, 제2호다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라. 선용품비는 국가보조항로 유사선박의 선용품비를 기준으로 제2호마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마. 임시용선료는 국가보조항로 유사선박의 일일 용선료를 기준으로 제2호사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바. 그 외 선박 등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2호라목, 바목, 아목, 자목과 같이 산출한다.

사.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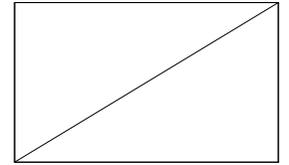
$$\{신설 보조항로의 기항지별 섬 인구 \times a \times 기항지별 종점기준 섬 주민 정상운임\} + \{신설 보조항로의 기항지별 섬 인구 \times b \times 기항지별 종점기준 승용차 공차기준 운임\}$$

단, a(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인근 보조항로의 섬 인구 1인당 연간 여객 이용횟수, 기항지별로 산출하여 평균치 산출) = 기항지별 여객운임수입 총액 ÷ {종점기준 섬 주민 정상운임×주민등록상 거주인구수}

b(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인근 보조항로의 섬 인구 1인당 연간 차량 이용횟수) = 기항지별 화물운임 수입 총액 ÷ {종점기준 승용차 공차기준 운임×주민등록상 거주인구수}

4. 산출내역서

2023년도



국가보조항로(대천-외연도) 운항 용역 산출내역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비 목	2023	2024	합 계	비 고
	23.7.1.~12.31.	24.1.1.~12.31.		
① 선원인건비	117,893	240,195	358,088	
② 유 류 비	210,297	420,594	630,891	유류단가 : 1,166.48 유류사용량 : 360,567
③ 선박수리비	91,957	190,262	282,219	
④ 보 험 료	11,344	22,863	34,207	
⑤ 선용품비	8,212	16,551	24,763	
⑥ 안전관리비	18,299	37,232	55,531	
⑦ 임시용선료	7,500	15,000	22,500	
⑧ 운항원가(①~⑦)	465,502	942,697	1,408,199	
⑨ 전산매표수수료	2,978	6,124	9,102	
⑩ 일반관리비(⑧×7.6%)	35,339	72,468	107,807	매표요원 임금 및 회계비용 포함
⑪ 이 윤 [(①~⑥+⑩)×10%]	49,334	100,017	149,352	
⑫ 비목별합산(지출비용)(⑧~⑪)	553,153	1,121,306	1,674,459	
⑬ 수 입 금	325,451	672,116	997,567	
⑭ 운항결손액(⑫-⑬)	227,702	449,190	676,892	
⑮ 장기민간용선료	50,000	100,000	150,000	
⑯ 예정가격(⑭+⑮)	277,702	549,190	826,892	
⑰ 예정가격(최종)	277,000	549,000	826,000	십만단위 이하 절사